##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54 발의연월일: 2024. 7. 29.

발 의 자: 곽규택·권영세·이헌승

정성국 • 백종헌 • 주진우

김대식 · 박수영 · 조승환

서지영・강선영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성립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제136조), 위계(제137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성하고 있고,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법규정으로 인하여 관공서 내에서의 폭언이나 욕설, 소란행위 등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안전까지 위협 받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성립요 건으로 위력을 추가하여 처벌의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7조).

법률 제 호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의 제목 중 "僞計에"를 "위계등에"로 하고, 같은 조 중 "僞計로써"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37條( <u>僞計에</u> 依한 公務執行妨	第137條( <u>위계등에</u> 依한 公務執行
害) <u>僞計로써</u> 公務員의 職務執	妨害)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行을 妨害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	
金에 處한다.	